ESG위원회 규정

제정 2022.01.1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이치엘비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ESG위원회의 규정으로회사의 대표이사 산하에 위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위원회의 구성, 운영, 권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회사의 자회사의 ESG 활동을 포함한다.

제2장 구 성

제2조(구성 및 선임)

1. 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해임은 본위원회 과반수 결의로 한다.
3. 위원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장)

1.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결의로 선정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최초 선임일로부터 2년까지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3장 회 의

제5조(위원회)

위원회는 분기 1회씩 연 4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이와 별도로 필요에 따라수시로 개최한다.

제6조(위원회의 소집)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고, 늦어도 회일 24시간 전까지 이를 각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구두, 기타 발송 및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회의의 연기나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결의방법)

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위원회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장 권 한

제8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ESG 과제 선정 및 보고
2. 회사의 ESG 전략 및 계획 승인
3. ESG 활동성과(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 대외평가 등) 보고
4. 사회공헌 집행결과 보고(기부, 후원, 협찬 포함)
5. 최소 연 1회 이상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활동내용을 보고 한다.

제9조(회의록)

1. 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 또는서명한다.

제5장 기타사항

제10조(기타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필요 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통지의무)

1.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위원회 부의사항 중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 사항으로서 이사회에 부의할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1.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고, 위원회 결의에 의해 정해지는 자가 이에 임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처리한다.

제13조(경비)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14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위원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